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안)

(외부의견조회용)

2019. 8.



기 관 규 칙 개 발 팀

- 주 요 개 정 내 용 -

-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건조일 기준)
 - 동등효력: 선급기술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일함.
 - 부록의 인용: 규칙에서 언급함.
 - MSC Res.407(96) 반영: FSS Code의 포말소화장치의 인정
 - IACS UR D 11 반영 : 편제 수정
 - MSC Res.435(98) 반영 :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	유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제 1 설 일반사양 101. 적용 1. 부터 5. 〈생략〉 6.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굴착장치를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굴착장치는 <u>지침</u> 에 따른다. <u>【지침 참조】</u> 102.부터 103. 〈생략〉	제 1 설 일반사양 101. 적용 1. 부터 5. 〈생략〉 6.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굴착장치를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굴 서 인용함.<해 부장치는 <u>부록 1</u> 에 따른다. 【지침 참조】 101.부터 103. 〈생략〉	
104. 동등효력 및 신기술 1.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체구조, 의장 배치 및 치수를 갖는 구조물이라도 우리 선급이 이 규칙에 적합하다는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적합하고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근간으로 신기술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 부력, 승강장치, 구조배치, 기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적용한 구조물을 등록할 수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0 장 방화구조,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	제 10 장 방화구조,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	
제 1 절부터 제 2 절 <생략> 제 3 절 소화장치	제 1 절부터 제 2 절 <생략> 제 3 절 소화장치	
301. 부터 303. 〈생략〉	301. 부터 303. 〈생략〉	
304.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 1. 부터 2. 〈생략〉 3. 고정식 물분무소화장치를 굴착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최소 분무량은 20.4 ℓ/m²-min 이상이어야 한다. 4. 굴착지역 및 유정시험지역에는 적어도 2개의 사수 및 분무 겸용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방사총(fire monitor)의 최소용량은 시간당 100 m³이상이LPG측에서 작동하는 방사총은 접근할 수 있는 보호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04.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 1. 부터 2. 〈생략〉 3. 굴착바닥판은 고정식 물분무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고정식 물분무장치는 최소 20.4 L/m² -min 의 분무량을 굴착바닥판 및 비상차단장비, 취약구조부재, 방화벽과 같은 관련 설비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3항의 대체방법으로, 최소 1.900 L/min의 유량과 1 MPa 의 압력으 방출되는 사수 및 분무겸용의 고정된 2개 이상의 모니터 (monitor)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되는 모든 지역과 설비는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모니터(monitor)에 의해 보호될 수 있어야한다. 5. 3항 및 4항의 소화장치는 보호되는 지역 외부에 위치한 작동장소로 부터 수동 방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작동에 필요한모든 밸브는 보호지역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선급이 인정한 경우, 자동방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6. 노즐, 배관, 관부착품 및 관련 부품들은 925 ℃ 까지의 온도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주 소화펌프의 용량이 소화주관 및 물분무장치에 요구되는 유량과압력으로 동시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경우, 주 소화펌프를 고정식물분무장치의 물 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msc 10<br="" 435(98),="" res.="">항> - MODU Code 9.8.1 - MODU Code 9.8.1 - 5항으로 내용이동 - MODU Code 9.8.2 - MODU Code 9.8.3 - MODU Code 9.8.4</msc>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	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	
401. 일반 ⟨생략⟩ 402. 헬리콥터 갑판 및 연료보급설비 1. 호스 및 노즐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방사기 포함)과 헬리 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소화기 :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조 소화장치 :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수 있다.	401. 일반 《현행과 동일〉 403. 소화장치 1. 호스 및 노즐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검용 노즐(방사가 포함)과 헬라 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바차하여야 한다. 1. 헬리콥터 갑판에 근접하여 다음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헬리콥터 갑판의 접근수단 근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소화기 (가) 주소화장치 :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조소화장치 :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장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항 (2)호 (나)로 이동함 - MODU Code 9.17.4 - 편제 수정 (UR D11.4.1): 분말소화기와 CO2 소화기를 이동식 소화기의 하부조항으로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 (1) 모니터(monitor) 또는 포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화지관으로 된 적절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능력은 6 ℓ/m² -min (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 또는 불화단백포(Film Forming Fluoroprotein Foam)의 경우에는 4.1 ℓ/m² -min)이상의 비율로 적어도 5분간 보호구역(헬리콥터의 주회전날개(main rotor)에서 꼬리회전날개(tail rotor)까지의 회전원주외곽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에 포말용액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소화장치의 기동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최소발포 비율에서의 포 말방출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화주관의 사용 중에도 포말소 화장치를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말용액은 해수와 함께 사용상 적합하여야 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허용한 것(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실무지침, 제1편 - 구조 및소화, 제8편-소화제 특성, 제8.1.5항 - 포말특성 표 8-1 레벨 'B'를 참조)보다 나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정식 소화장치 (가)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 (a) 모니터(monitor) 또는 포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화지관으로 된 적절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능력은 6 ℓ/m²-min(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 또는불화단백포(Film Forming Fluoroprotein Foam)의 경우에는 4.1 ℓ/m²-min)이상의 비율로 적어도 5분간 보호구역(헬리콥터의 주회전날개(main rotor)에서 꼬리회전날개(tail rotor)까지의 회전원주외곽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에포말용액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소화장치의 기동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최소발포 비율에서의포말방출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화주관의 사용 중에도포말소화장치를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포말용액은 해수와 함께 사용상 적합하여야 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허용한 것(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실무지침, 제1편-구조 및 소화, 제8편-소화제 특성, 제8.1.5항 - 포말특성표용-1 레벨 'B'를 참조)보다 나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나) 고정식 소화수장치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과 헬리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한다.	- 편제 수정 (UR D11.4.1): 고정식 포말소화장치와 고정식 소화수장치를 고정식 소화장치의 하부조항으로 함. - 1항으로부터 이동함. <msc 407(96)="" res.=""></msc>
<u>5. 부터 8.</u> 〈생략〉	(3) (2)호 (가)의 요건을 대신하여 FSS Code의 요건에 적합한 포말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부터 5. 〈현행과 동일〉	- MODU Code 9.17.4.6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안)

(최종)

제7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 2019. 12.



기 관 규 칙 개 발 팀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일 기준)

- Res.MSC.435(98) 반영
 - DP 시스템의 연결 해제 및 비상차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차단 로직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독립성)을 명확히 함.
 -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 유지보수 및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자격에 대한 요건과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장비의 등록부 비치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
- 위험구역에 적용되는 참고 표준을 최신의 IEC 국제표준으로 업데이트함.

· 첫 · 첫	개 정 안	게 저 시 O
<u>현</u>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	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	
제 1 절 - 제 3 절 <생략>	제 1 절 - 제 3 절 <현행과 동일>	
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	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	
	401. 굴착작업에 의한 비상상태시의 정지	
1. 〈생략〉 2. 위치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자동위치제어만을 갖춘 구조물의 경우, 유정의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위치제어의 조작성과 관련된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의 선택정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3 5. 〈생략〉	유정의 무결성(integrity)을 유자하기 위해 자동위치제어의 조작성과	(개정) - Res.MSC.435(98)을 반영하여, DP 시스템의 연결 해제 및 비상차단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차단 로직 시스템의 독립성)을 명확히 함.
402. 〈생략〉	402.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501.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 1. 운전상의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위험구역에 전기설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장에서 규정한 형식의 장비 및 케이블 만 설치할 수 있다. 위험구역에서의 전기설비 및 케이블의 선정 및 설치는 다음 표준에 따라야 한다. (1) KS C IEC 61892-1: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 (2) KS C IEC 61892-2: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2부: 시스템 설계 (3) KS C IEC 61892-3: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3부: 전기장치 (4) IEC 61892-4: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4부: 케이블 (5) KS C IEC 61892-5: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5부: 이동용 전기장치 (6) KS C IEC 61892-6: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6부: 설치의 일반 요구사항	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501.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 1. 운전상의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위험구역에 전기설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장에서 규정한 형식의 장비 및 케이블 만 설치할 수 있다. 위험구역에서의 전기설비 및 케이블의 선정 및 설치는 다음 표준에 따라야 한다. (1) KS ← IEC 61892-1÷,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 (2) KS ← IEC 61892-2÷,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2부: 시스템 설계 (3) KS ← IEC 61892-3÷,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3부: 전기장치 (4) IEC 61892-4÷ 2007,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4부: 케이블 (5) KS ← IEC 61892-5÷,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5부: 이동용 전기장치 (6) KS ← IEC 61892-6÷,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6부: 설치의 일반 요구사항 (7) KS ← IEC 61892-7÷,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7부: 위험장소의 일반요구사항 위험구역	IEC 국제표준으로 업 데이트함. (개정) - IEC 60079-4:1975,
1.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다음 표준에 따라 제작, 시험, 표시	 2. 〈현행과 동일〉 502. 전기설비의 보호 1.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다음 표준에 따라 제작, 시험, 표시 및 설치되어야 하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적절한 시험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079 4: 방폭 기기 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보충판1 	60079-20-1:2010으로 대체됨. 이후 IEC 60079-20-1:2010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KS C IEC 60079-10: 방폭 기기 - 제10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신설〉	(3) KS C IEC 60079 10: 방폭 기기 - 제10부: 폭발 위협 장소의 구분 . (1) IEC 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제11부: 구역의 분류 - 폭발성 <u>가스 분위기</u>	- IEC 60079-10:2002는 IEC 60079-10-1:2008 로 대체됨. 이후 IEC
〈신설〉 (4) IEC/TR 60079-12: 1978 방폭 기기 - 제12부: 실험에 의한 최대 소염(safe gap) 및 최소 점화전류에 따른 가스 와 공기 혼합물 또는	(2) IEC 60079-11, 폭발성 분위기 - 제11부: 본질안전 "i"에 의한 장비보호(4) IEC/TR 60079-12: 1978 방폭 기기 - 제12부: 실험에 의한 최대소염(safe gap) 및 최소 점화전류에 따른 가스 외 공기 혼합물 또는	60079-10-1:2008은 IEC 60079-10-1 :2015 로 최종 개정됨
증기와 공기 혼합물의 구분 (5) IEC/TR 60079-13: 1982-01 방폭 기기 - 제13부: 압력으로 보호되 는 방 또는 건물의 구조 및 사용	증가와 공기 혼합물의 구분 (5)(3) IEC/TR 60079-13: 1982-01 방폭 가기 - 제13부: 압력으로 보 호되는 방 또는 건물의 구조 및 사용 IEC 60079-13, 폭발성 분위기 - 제13부: 가압실 "p" 및 인위적 통풍실 "v"에 의한 장비 보호	- IEC/TR 60079-13: 1981은 몇 번의 개정 을 거쳐 IEC 60079-13
(6) KS C IEC 60079-14: 방폭 기기 - 제14부: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 (7) IEC/TR 60079-16: 1990 방폭 기기 - 제16부: 분석실(analyser)	(6)(4) KS C IEC 60079-14: 방폭 가기 제14부: 폭발 위험 장소에 서의 전기 설비 IEC 60079-14, 폭발성 분위기 - 제14부: 전기설비의 설계, 선택 및 설치 (7)(5) IEC/TR 60079-16: 1990 방폭 기기 - 제16부: 분석실	:2017으로 최종 개정 됨.
	(analyser <u>(s)</u> room <u>houses</u>)의 보호를 위한 인위적 통풍 (8)(6) IEC 60079-17 : 2007 방폭 기가 , 폭발성 분위기 - 제17부: 전 기설비의 검사 점검 및 보수정비 <u>유지보수</u>	
(9) IEC 60079-19: 2006-10 방폭 기기 - 제19부: 전기설비 수리, 분해 검사 및 교정 (10) IEC 60079-20: 1996 방폭 기기 - 제20부: 전기설비의 사용과 관 련된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대한 자료	(9)(7) IEC 60079-19: 2006 10 방폭 가가 , 폭발성 분위기 - 제19부: 전기설비 수리, 분해검사 분해점검 및 교정 (10) IEC 60079-20: 1996 방폭 기기 - 제20부: 전기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대한 자료	
(11) IEC 60079-25: 2003 방폭 기기 - 제25부: 본질안전 장치 (12) IEC 60079-27: 2008 방폭 기기 - 제16부: 필드버스(fieldbus) 본 질안전개념 (FISCO)	(11)(8) IEC 60079-25: 2003 방폭 가가 , 폭발성 분위기 - 제25부: 본 질안전 장치 (12) IEC 60079-27: 2008 방폭 가기 - 제16부: 필드바스(fieldbus) 본 질안전개념 (FISCO)	- IEC 60079-27:2008은 IEC 60079-11:2011 및
(13) KS C IEC 60079-28: 폭발분위기 - 제28부: 광학 방사용 장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	생선 (13)(9) KS C IEC 60079-28: 폭발분위가 , 폭발성 분위기 - 제28부: 광학 방사용 장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	IEC 60079-11:2011 및 IEC 60079-25:2010 대체됨.

(14) IEC 60079-29-1: 2007 방폭 기기 - 제29-1부: 가스탐지기 - 가연성 가스탐지기의 성능요건 (15) IEC 60079-29-2: 2007 방폭 기기 - 제29-2부: 가스탐지기 - 가연성 가스탐지기의 성능요건 연성 가스 및 산소 탐지기의 선정, 설치, 사용 및 보수정비 (16) KS C IEC 60079-30-1: 방폭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요구사항 (16) KS C IEC 60079-30-1: 방폭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한 대이스 히터 - 일반 및 시험요구사항 항 1EC 60079-30-1+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 - 일반 및 시험요구사 항 2015로 대체됨.
(17) KS C IEC 60079-30-2: 방폭천기기계기구 30-2부: 전기 저항 트 데이스 하터 설계, 시공 및 유지를 위한 응용 가이트 (신설) 2.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3. 우집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설명 제용 기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원선함. 제 6 절 〈생략〉 제 6 절 〈생략〉 제 6 절 〈생략〉 제 6 절 〈변행과 동일〉 지제 6 절 〈변행과 동일〉 대 11) KS C IEC 60079-30-2: 쌍帯천가자개가구, 폭발성 분 위기 - 제20-1부: 가스 및 증기 분 IEC (50079-30-2: 건 N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안) (제2장 선급등록 및 검사)

(외부의견 조회용)



- 주요개정내용-

-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15 (Rev.3 May 2019) 개정사항 반영 - CoC(지적사항)으로 통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 급등 록 및 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1. 일반사항〈생략〉	101. 일반사항〈현행과 동일〉	
102. 용어의 정의 1.~ 12. 〈생략〉 13.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 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급유지조건 또는 지적사항 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 14. ~ 16. 〈생략〉	102. 용어의 정의 1.~ 12. 〈현행과 동일〉 13.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 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u>지적사항</u> 도 남기지 않는 수리 를 말한다. 14. ~ 16. 〈현행과 동일〉	- 용어 통일
1. ~ 2. 〈생략〉 3.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 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Recommendation/Condition of Class)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 을 지정할 수 있다.	103. 수리 1. ~ 2. 〈현행과 동일〉 3.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 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Condition of Class)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지적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 IACS UR Z15(Rev.3 May 2019)의 1.3.3을 반영함.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적용지침 개정(안)

제7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 2020. 1.



기 관 규 칙 개 발 팀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일 기준)

- Res.MSC.435(98) 반영
 -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 유지보수 및 분해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기준을 참고하도록 IEC 표준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7 장 <신설>	<u>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u> 전기설비	
	<u>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u> 502. 전기설비의 보호	(신설) - Res.MSC.435(98)을 반영
	1. 규칙 502.의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합한 인원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IEC 간행물 또는 동등물을 참조할 것. (1) IEC 60079-14, 폭발성 분위기 - 제14부: 전기설비의 설계, 선택 및	비의 수리, 유지보수 및
	설치 (2) IEC 60079-17, 폭발성 분위기 - 제17부: 전기설비의 점검 및 유지 보수 (3) IEC 60079-19, 폭발성 분위기 - 제19부: 전기설비 수리, 분해점검	
	<u>및 교정</u>	